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71
----------	------

2018. 2. 2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11. 14 전철수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. 11. 15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2.27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전철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주택법」 개정 사항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)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·이동함(안 제9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「주택법」의 전부개정 사항과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철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기존의 「주택법」이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(‘16.8.12 시행)되고,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분리·제정(‘16.8.12 시행)되었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위 법 체계에 따라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 나머지 개정사항은 주택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로 특이사항 없음.

주택 조례 <삭제>	공동주택 관리 조례 <신설>
<p>제9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</p>

주택 조례 <삭제>	공동주택 관리 조례 <신설>
	<p>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2조의16제1항”을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10호”를 “「주택법」 제57조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3 제12호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 주택의 비율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2조의16제1항에서 "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	제7조의2(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 주택의 비율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----- -----.
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 ----- 「주택법」 제57조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의3 제12호----- -----.
제9조의2 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~ ③ (생략)	<삭 제>